

고성군정기 · 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

(의안번호 제70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8. 2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8. 21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8. 29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고성군정기 · 임시시장의 개설방법, 시설 기준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(안 제3조)

- 대지면적이 정기시장은 1,000㎡이상, 임시시장은 330㎡이상
- 시장내의 급수 · 배수 · 위생시설 등의 시설설치 규정

나. 정기시장의 관리운영(안 제4조)

다. 임시시장의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규정(안 제7조)

라.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임시시장 개설지정자에게 책무부여(안 제10조)

마. 정기시장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사용허가 취소대상
(안 제11조, 제14조)

바. 시장사용료의 징수기준액, 납기, 환급, 감면에 관한 사항
(안 제15조 내지 제18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의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 정당하고 합법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구수정과 용어, 체계, 형식 등이 규정대로 합당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또한 동 조례 제정으로 “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”가 폐지되어도 공설시장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되며,
- 특히, 안 제15조의 시장을 사용하는 자와 사용료 납입기준이 되는 별표 1의 재개발 이전의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기준과 별표 2의 재개발 이후의 정기시장 점포사용료 징수기준 및 임시시장의 사용료 기준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당하게 책정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건강보조식품이나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노인들이 일시적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판매하는 행위도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의 범위에 해당하는지
- 답 :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의 범위에 들지 않음. 다만, 대형유통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시설이 수명을 다하여 새로이 건립할 시 재개발 완료시까지 일정한 구역에서 임시로 시장을 330㎡이상 개설하고자 할때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8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